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82

발의연월일: 2020. 8. 4.

발 의 자: 박상혁 · 인재근 · 민병덕

김정호・맹성규・최종윤

최인호 • 한준호 • 박영순

서일준 · 양정숙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는 아동권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지원조항이 있음에도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포함 한 가족이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45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단서조항을 규정하여, 아동학대 대응기관의 지속적인 확충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기준 68개소에 머물러 있음.

이에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등의지원에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야 한다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강화하려함(안 제29조제3항, 제45조제2항 단서 삭제 및 제71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성실하게 참여하여야"를 "참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 된 후 즉시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는 지원에 피해 아동이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
에 대한 지원) ①·② (생 략)	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③
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	
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	
공하는 지원에 <u>성실하게 참여</u>	<u>참여하여야</u>
<u>하여야</u> 한다. <u><단서 신설></u>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
	유가 해소된 후 즉시 상담・교
	육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2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	
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	
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을 시·도 및 시·군·구에 1	
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u>다만</u>	<u><단서</u>
시 ·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	삭제>

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 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 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2의2. (생 략) <신 설>

3. ~ 7.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는 지원
에 피해아동이 참여하게 하
지 아니한 사람

3. ~ 7. (현행과 같음)